

감사위원회 규정

제 정 2010.03.03

개 정 2018.1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 임)

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개 최)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 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

나.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이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라.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마. 주주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청구시 그 소제기의 결정

바.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사항

사.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 자.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차.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파.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외부인사 및 외부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